

의안번호	2124843
의 퇴 인	진선미 의원
회 답 일	2023. 7. 13.
추계번호	23E28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인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농어민 지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4년 109억원, 2026년 112억원 등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33억원(연평균 1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단,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및 청년농업인 인지세 면제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의 개인별 출자·배당금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감면실적 등 기초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인지세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안 제116조제2항제3호)	-109	-111	-112	-333	-111

주: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인지세수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8조의5(조합 등출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 (현행) 1천만원 → (개정안) 3천만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세지출
2	안 제116조제2항 제3호(인지세의 면제)	-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인지세 면제에 대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 상향 - 적용기한: (현행) 2023.12.31. → (개정안) 2026.12.31. - 청년농업인* 면제 한도: (현행) 1억원 → (개정안) 3억원 ※ 청년농업인: 15~39세의 농업인	조세지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	×	· 개인별 출자금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
2	안 제116조제2항제3호(인지세의 면제)	○	· 단, 청년농업인 면제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는 청년농업인의 감면 실적이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농어민 지원 등에 대한 인지세 감면액은 2022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인지세수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2년 추정치는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2년 잠정실적에 2022년 예산 대비 실적 비율을 적용하여 구한 값
 - 국회예산정책처의 인지세 전망¹⁾은 명목GDP, 금리 등을 반영한 회귀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청년농업인 인지세 면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는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농협 등 조합에 출자한 개인별 출자금 등에 대한 자료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
 - 2021년 기준 농협 등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및 회원수는 약 1,651만명, 배당금은 6,895억원으로 집계²⁾되어 1인당 18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에 미치지 못하며, 개정안에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10.

· $\log(\text{세액}) = f\{c, \text{금리}, \log(\text{명목GDP}), \text{더미변수}\}$

2) 홍범교·김진영,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9.

따라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 등에 1,000~3,000만원을 출자한 조합원 수가 집계되지 않음

- 청년농업인 면제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는 인지세 면제실적 중 청년농업인의 면제실적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

□ 개정안이 2023년 중 통과되어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농어민 관련 서류 및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운용

-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해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및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 최근 2017년 개정으로 2018년부터 소비대차증서 면제의 수혜대상 확대(수산업협동조합 포함) 및 면제한도 요건 완화(기존 5천만원 → 현행 1억원)
- 창업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표 2] 농어민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주요내용

구분	근거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내용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제5호	· 수혜대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조합원 · 면제대상 서류: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소비대차증서 - 단, 용자합계액 1억원 이하만 면제 대상
	제6호	· 수혜대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조합원 및 어린이예금통장 가입자 · 면제대상 서류: 예금·적금증서·통장

구분	근거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내용
	제7호	· 면제대상 서류: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사업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제9호	· 면제대상 서류: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개량자금 융자 및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제11호	· 면제대상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19호	· 수혜대상: 창업중소기업 · 면제대상 서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 관련 융자를 받기위한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감면실적) 농어민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실적은 2018년 82억원에서 2021년 122억원으로 증가

-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2년 잠정실적을 2022년 인지세 실적을 바탕으로 보정한 수치는 110억원 수준
 - 110억원 = 조세지출예산서상 2022년 잠정 실적(131억원) × 보정계수(0.843)³⁾

[표 3] 농어민 지원 및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실적 :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추정) ¹⁾
- 농·어민 지원	77	81	92	116	100
- 창업 중소기업의 융자서류	5	4	6	6	10
계	82	85	98	122	110

주: 1)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2022년 감면액 잠정치를 보정한 값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2022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향후 농어민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액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모형에 따른 인지세 세수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고 세수효과 추계

3) $0.843 = \frac{2022\text{년 인지세 실적}(7,988\text{억원})}{2022\text{년 인지세 예산}(9,480\text{억원})}$

- 국회예산정책처의 인지세 전망은 명목GDP 증가율, 금리변동 등을 반영한 회귀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
 - $\log(\text{세액}) = f(c, \text{금리}, \log(\text{명목GDP}), \text{더미변수 등})$
 - 향후 명목GDP 등 변수의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2.10.)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
- 회귀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도별 인지세수는 2023년 $\triangle 3.7\%$ 으로 감소하지만, 2024~2026년간 전년대비 1.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회귀모형에 따른 인지세 증감률 전망치: 2023~2026년

(단위: %)

	2023	2024	2025	2026
증감률	-3.7	3.0	1.6	1.0

- 2022년 면제액 추정치에 인지세수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인지세 세수 감소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

[표 5]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인지세 감면액 추정치: 2022~2026년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감면액	100	97	99	101	102
창업 중소기업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액	10	10	10	10	10
계	110	107	109	111	112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농어민 지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4년 109억원, 2026년 112억원 등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33억원(연평균 1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단,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및 청년농업인 인지세 면제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의 개인별 출자·배당금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감면실적 등 기초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2024~2026년, 인지세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116조제2항제3호)	-109	-111	-112	-333	-11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

의안번호	
의뢰인	진선미의원
회답일	2023.6.26.
추계번호	23E28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안 제88조의5)
 -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인 조합 등 출자금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출자한 조합원 및 회원의 개인별 출자금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자료 필요
 - 현행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한 조합원 개인별 출자금액 및 배당금액 자료가 있어야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가능

□ 그러나 개인별 출자금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2022.9.)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출자한 조합원 및 회원수는 약 1,651만명, 출자금은 총 30.5조원, 이에 따른 배당금은 6,895억원 규모로 집계됨([표 1] 참조)
 - 전체 출자금액을 전체 조합원·회원수로 나눈 1인당 출자금액은 약 180만원으로 비과세한도(1천만원)를 크게 밑도는 수준
 - 전체 출자금(30.5조원) 중 현행 비과세 한도(1천만원)를 초과하여 출자한 금액은 16.9조원 규모이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한 조합원수가 집계되지 않아 1인당 평균 출자금액은 알 수 없음
 - 따라서 동 자료만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불가

[표 1]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현황

(단위: 천명, 억원)

구분	조합원 수 (A)	총 출자금 ¹⁾ (B)	출자금 규모		1인당 출자금 (백만원, B/A)	출자배당금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농협	2,086	136,190	59,363	76,827	6.5	3,651
수협	153	4,669	2,992	1,677	3.0	148
산림조합	394	3,645	2,014	1,630	0.9	99
신협	6,396	64,537	29,281	35,246	1.0	973
새마을금고	7,481	95,716	42,421	53,295	1.3	2,024
합계	16,510	304,756	136,072	168,675	1.8	6,895

주: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준조합원 가입금액을 합산한 총 출자금으로 총 출자금 중 조합원의 출자금이 99.7%를 차지

자료: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22.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과	장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박지원
연 락 처	02-6788-4662
	jwpark1209@nabo.go.kr
